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 추가〉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4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0.
3. 회 부 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 제1항).

Ⅲ. 검토의견: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 추가

- ☐ 개정안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 및 파산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u>경과 등</u>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 ----- ----- --- <u>경과, 폐업·파산 등</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법 제21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법 제75조제2항제4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개인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 등으로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로 ① 보유기간의 경과, ②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③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를 예시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의 폐업 및 파산의 경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인정보 파기의 사유의 예시로 추가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 등으로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예

1) 티몬·위메프 사태에 ‘쇼핑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 내일신문, 2024. 7. 31. 게재
(다만, 티몬·위메프는 2025. 2. 12. 현재 파산한 것은 아니며 법정관리 중임)

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²⁾은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³⁾은 ‘폐업·청산’ 등을 동 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어, 현재도 폐업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138쪽